

발행일 : 2021.10.01.(20차 개정)
고유번호 :

가격조사산정기준서

2021년10월 ~ 12월
(2021년 4분기용)

본 기준서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협회 허락없이 불법복제·복사·배포하거나, 전산 등 제2차 저작
을 금지합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유의사항

1. 가격조사산정을 하려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본 협회의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4의 2 호자)
 2. 가격조사산정을 하려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본 기준서에 의거하여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3. 가격조사산정을 하려는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거나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에는 본 협회에서 정하는 징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기준서는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가격조사산정자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동차진단평가사에게 배포하는 자료임.

적용 범위

1. 본 가격조사·산정기준서는 승용차, 25인 미만의 승합차, 5톤미만의 화물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다른 차종의 가격조사·산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격조사·산정자 징계에 관한 사항

1. 협회 정관 / 자격 검정 규정 승인 근거

- 국토부(정관)
자동차정책과-2076(2016.4.4.)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 직업능력개발원(자격검정규정)
민간센터-3836(16.1.11) 공인 민간자격 변경승인 신청결과 통보

제30조 (자동차 진단평가사의 정보관리)

1. 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호에 따라 자동차가
가격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 나.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 다.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대한 사항
 - 라.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 협회는 제1항 중 다,라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징계위원회)

1. 회장은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심
의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징계 혐의사실을 조사·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조사위원은 협회장이 지정한다.
3. 가격조사산정자에 대한 징계조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가격조사산정서 허위 발행신고 접수시
 - 나. 가격조사산정관련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
 - 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협회장은 징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
회를 소집하고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5. 양정기준은 협회규정에 따른다.

가격조사·산정자 징계에 관한 사항

2.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진단평가사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가격조사·산정자”라 함)에 대한 합리적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양정기준) 협회장은 정관 제31조에 따라 가격조사·산정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징계사유	징계내용
1.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거짓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가격조사·산정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다. 가격조사·산정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가격조사·산정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1차 : 자격정지 30일 2차 : 자격정지 90일 3차 : 자격취소
2. 자격정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가격조사·산정업무를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 ※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자로 처리함	1차 : 자격정지 2년 추가 2차 : 자격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가격조사·산정업무를 하게한 경우	자격정지 2년
※ 타 가격조사·산정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협회의 공신력에 위해를 가한 경우	1차 : 자격정지 30일 2차 : 자격정지 90일 3차 : 자격취소

목 차

I.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가격조사·산정 절차)	2
제5조(가·감점점수 운용)	2
제6조(가격조사·산정기준서의 개정)	2
제7조(등급분류 및 등급계수)	3
제8조(사용년 계수)	12
제9조(잔가율표)	12
제10조(기준가격)	13
제11조(기준가격 산출 및 보정)	15
제12조(보정가격)	16

II. 자동차종합상태

제13조(주행거리 평가)	19
제14조(차대번호 표기 평가)	20
제15조(배출가스 검사 평가)	20
제16조(튜닝 평가)	21
제17조(특별이력 평가)	22
제18조(용도변경 평가)	22
제19조(색상 평가)	23
제20조(옵션 평가)	24

목 차

Ⅲ.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제21조(상태표시)	29
제22조(사고·수리이력 평가 및 랭크별 적용계수)	29

Ⅳ. 자동차 세부상태

제23조(주요장치 성능평가)	39
제24조(주요장치 성능감점계수 산출)	40

Ⅴ. 자동차 기타정보

제25조 (외장상태 평가)	43
제26조 (광택 평가)	45
제27조 (내장상태 평가)	45
제28조 (룸 크리닝 평가)	46
제29조 (휠 상태 평가)	46
제30조(타이어 상태 평가)	47
제31조 (유리 평가)	48
제32조 (기본품목 평가)	49
제32조의2 (자동차 기타정보 가격조사산정액 산출방법) ...	49

Ⅵ. 기타의견 작성 및 조사·산정가격 도출

제33조 (기타의견 작성)	53
제34조 (조사·산정가격 도출)	53
제35조 (조사·산정가격의 허용오차 범위)	53

- 별 첨

I.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가격조사·산정 절차)	2
제5조(가·감점점수 운용)	2
제6조(가격조사·산정기준서의 개정)	2
제7조(등급분류 및 등급계수)	3
제8조(사용년 계수)	12
제9조(잔가율표)	12
제10조(기준가격)	13
제11조(기준가격 보정)	15
제12조(전년도 보정가격)	16

I.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을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격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명시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이란 평가대상 자동차와 표준적인 점검과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하 “표준상태”라함)의 자동차를 이 기준서의 점검 항목별로 비교·경제적 가치 차이를 산출하여 평가대상 자동차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가격조사·산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치감가 : 기능에 영향이 없고 통상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긁힘 또는 손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가를 말한다.
 - 나. 수 리 : 부품을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는 손상으로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손상을 말한다.
 - 다. 교 환 : 손상이 큰 것으로 부품을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손상이 커서 수리로서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표준상태의 자동차 가격으로서 보험개발원에서 매분기별 발표하는 기준가액을 말하며, 월별보정이 필요하거나 차량 특성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5. “표준상태”의 자동차는 다음의 상태를 말한다.

- 가. 외관과 내부 상태는 손상이 없고 광택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나. 엔진과 하체(구동장치)가 양호하고 각종 오일류가 정상이고 주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불법 구조(튜닝) 변경 등이 없이 신차 출고시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라. 주행거리가 표준 주행거리(1년 기준, 2만 km)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마. 타이어 트레드 부 흡의 깊이가 50%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바. 외관과 주요 골격은 사고수리 이력 및 개조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제2호의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자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기준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가격조사·산정 절차) 자동차의 가격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기본정보 등 확인
2. 자동차의 종합상태 점검 및 가격산정
3.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점검 및 가격산정
4. 자동차 세부 상태 점검 및 가격산정
5. 자동차 기타 정보 점검 및 가격산정
6. 특기 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 작성
7.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결과 작성

제5조(가·감점 점수의 운용) 가·감점 점수는 차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가감점 평균치를 점수화한 것으로서 실비 견적액의 90%를 기본으로 설정하며, 가·감점 1점은 1만 원으로 계상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다.

제6조(가격조사·산정기준서의 개정) 가격조사·산정자 등은 이 기준서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제출된 개정의견을 가격조사산정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7조(등급분류 및 등급계수) 자동차 세부 상태별 평가점수를 차량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 배기량과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량 등급을 분류하고 분류된 등급에 계수를 설정 적용한다. 승용차, SUV, RV는 배기량을, 승합차는 승차인원을, 화물차는 최대 적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 적용한다.

1. 승용형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기준

구분	등급	차종	배기량 (단위 : 1,000 cc)
승용	특C	대형	3.0이상 ~
	특B	대형	2.4이상 ~
	특A	준대형	2.1이상 ~
	I	중형	1.7이상 ~
	II	준중형	1.3이상 ~
	III	소형	1.1이상 ~
	경	경형	~ 1.1미만
적용대상	1~6인승 기준하여 세단형, 헤치백, 워건 등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분	등급	차명
승용	특C	제네시스 EQ900(5.0), K9(5.0), G90L, 체어맨W(5.0)
	특B	제네시스G90, 에쿠스, 제네시스 EQ900, K9, 베리타스, 체어맨W, 베리타스
	특A	제네시스G80, 다이너스티, 아슬란, 그랜저, K7, K8, 임팔라, SM7, 오피러스, 알페온, 체어맨H
	I	i40, 쏘나타, 마르샤, 제네시스 G70, 로체, K5, 스텔러, 옵티마, 크레도스, 매그너스, 브로엄, 토스카, 프린스, 말리부, SM5, SM6
	II	i30, 벨로스터, 아반떼, 스텔라, 엘란트라, 포르테, K3, 세피아, 스펙트라, 쉐라토, 쏘울,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르망, SM3
	III	엑센트, 베르나, 클릭, 엑셀, 포니, 아벨라, 프라이드, 칼로스, 젠트라, 아베오, 클리오
	경	모닝, 레이, 비스토,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분	등급	차명
승용	특C	롤스로이스 팬텀, 고스트
	특B	BMW 7시리즈, 8시리즈, M8,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S클래스, AMG GT, 포르쉐 파나메라, 아우디 A8, S8L, 렉서스 LS, 폭스바겐 페이톤, 벤틀리 컨티넨탈 GT, 플라잉스피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특A	BMW 5시리즈, 6시리즈, 벤츠 CLS클래스, E클래스, 아우디 A6, A7, ES300h, 불보 S90, 기블리, 재규어 XF, 캐딜락 CT5
	I	BMW 3시리즈, 4시리즈, 불보 S60,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아우디 A4, A5, S5, 폭스바겐, 파사트GT, 아테온, 캐딜락 CT4, 포드 몬데오, 푸조 508, 벤츠 C-클래스
	II	BMW 1시리즈, 2시리즈, 벤츠 A클래스, CLA클래스, 아우디 A3, 푸조 308, 폭스바겐 제타, 골프,
	III	미니 해치백, 미니 컨버터블, 시트로엥 C3, 아우디 A1, 폭스바겐 폴로
	경	스마트 포투

라. 기타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하여 차명과 차종이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SUV형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기준

구 분	등 급	차 종	배기량 (단위 : 1,000 cc)
SUV	특C	대형	3.0이상 ~
	특B	준대형	2.4이상 ~
	특A	중형	2.1이상 ~
	I	준중형	1.7이상 ~
	II	소형	1.3이상 ~
	III	경형	~ 1.3미만
	경		-
적용대상	2~8인승 이하 다목적용의 지프 승용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SUV	특C	
	특B	트레버스, 제네시스GV80, 렉스턴, 렉스턴스포츠, 모하비, 팰리세이드, 맥스크루즈, 베라크루즈, 콜로라도, 모하비, 테라칸,
	특A	제네시스 GV70, 쏘렌토, QM6, 쏘타페, 이퀴녹스, 갤로퍼, 블레이저, 액티언 스포츠, 윈스툼, 캡티바, 코란도 스포츠, 무쏘, 무쏘 스포츠, 카이런, 올란도
	I	스포티지, 투싼, 코란도, 코란도c, QM5, 액티언
	II	셀토스, 베뉴, XM3, 트레일블레이저, 티볼리, 코나, 트랙스, QM3, 스톨닉, 캡처, 니로
	III	캐스퍼
	경	

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분	등급	차명
SUV	특C	BMW X7, 벤츠 GLS클래스, 마이바흐 GLS , 포드 익스페디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링컨 네비게이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벤틀리 벤틀리가, 람보르기니 우르스, 롤스로이스 컬리넨
	특B	BMW X5, X6, 벤츠 GLE-클래스, 아우디 Q7, Q8, 폭스바겐 투아렉,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볼보 XC90, 포드 익스플로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마세라티 르반떼, 렉서스 RX, 캐딜락 XT6 포르쉐 카이엔
	특A	볼보 XC60, BMW X3, X4, GLC-클래스, 아우디 Q5, SQ5, 지프 랭글러, 체로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디펜더 110, 푸조 5008, 링컨 노틸러스, 재규어 F-페이스, 렉서스 NX
	I	볼보 XC40, 폭스바겐 티구안, 벤츠 GLA-클래스, GLB-클래스, BMW X1, X2, 시트로엥 C5,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스커버리 스포츠, 아우디 Q3, 지프 컴패스, 혼다 CR-V, 링컨 코세어, 캐딜락 XT4, 푸조 3008, 재규어 E-페이스
	II	미니 컨트리맨 , 폭스바겐 티록, 지프 레니게이드, 아우디 Q2, 푸조 2008, 시트로엥 C3, C4, DS3 크로스백,
	III	
	경	

라. 기타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하여 차명과 차종이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RV형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기준

구 분	등 급	차 종	배기량 (단위 : 1,000 cc)
RV	특C	-	4.0이상 ~
	특B	대형	2.8이상 ~ 4.0미만
	특A	중형	2.1이상 ~ 2.8미만
	I	준중형	1.7이상 ~ 2.1미만
	II	소형	~ 1.7미만
	III	-	-
	경	-	-
적용대상	2~15인승 이하 다목적용의 미니밴 승용, 승합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RV	특C	
	특B	코란도 투리스모, 카니발하이리무진, 로디우스,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
	특A	
	I	
	II	
	III	
	경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승용	특C	
	특B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딧세이
	특A	
	I	
	II	
	III	
	경	

라. 기타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하여 차명과 차종이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4. 전기, 수소자동차 자동차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기준

구 분	등 급	차종(승용)	차종(SUV)
차종	특C	대형	대형
	특B	준대형	중형
	특A	중형	준중형
	I	준중형	소형
	II	소형	-
	III	경형	-
	경	초소형	-
적용대상	자동차등록증 기준하여 승용형, SUV형, RV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구 분	등 급	차종(승용)	차종(SUV)
전기 수소	특C		
	특B		넥쏘
	특A		GV60, EV6, 아이오닉5,
	I	아이오닉 일렉트릭, 쏘울 EV, SM3 Z.E	니로 EV, 코나 알렉트릭, 볼트 EUV
	II	볼트 EV, 조에, 쏘울 EV,	
	III	레이 EV, 스파크 EV	
	경	SMART EV Z, CEVO-C, M1	

9.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종(승용)	차종(SUV)
전기 수소	특C	벤츠 EQS,	GMC 허머 EV
	특B	테슬라 모델S, 포르쉐 타이칸	벤츠 EQC, 테슬라 모델Y, 재규어 I-페이스, 테슬라 모델X
	특A	테슬라 모델3	벤츠 EQA, 아우디 Q4 e-트론
	I		푸조 e-2008, DS3크로스백 E-텐스
	II	푸조 e-208	
	III		
	경		

1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5. 승합차의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기준

구 분	등 급	차 종	승차정원
승합	특C	대형	16인승 ~ 25인승
	특B	준대형	-
	특A	중형	13인승 ~ 15인승
	I	준중형	~ 12인승 이하
	II	소형	-
	III	-	-
	경		경승합, 경화물(밴), 경(특장)
적용대상	다인승 2~25인승 버스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승합	특C	레스타, 마스터, 카운티, 쏘라티, 스프린터
	특B	
	특A	봉고버스, 그레이스
	I	
	II	
	III	
	경	다마스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승합	특C	
	특B	
	특A	
	I	
	II	
	III	
	경	

라. 기타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하여 차명과 차종이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6. 화물차의 등급분류

가. 등급분류 기준

구 분	등 급	최대적재용량
화 물	특C	4.0 t ~ 5 t
	특B	1.5 t ~ 3.9 t
	특A	1.1 t ~ 1.4 t
	I	1 t
	경	0 t ~ 0.9 t
적용대상	5톤이하 화물 운송형	

나. 국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화물	특C	메가트럭4톤이상,
	특B	메가트럭, 마이티
	특A	봉고1.3톤이상,
	I	포터, 봉고3, 리베로
	II	-
	III	-
	경	라보

다. 수입산 등급분류 적용 (차명별)

구 분	등 급	차 명
화물	특C	
	특B	
	특A	
	I	
	II	
	III	
	경	

라. 기타

자동차 등록증을 기준하여 차명과 차종이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7. 등급계수 : 1항의 등급분류에 따른 등급별 계수는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한다.

등급 제조국	특C	특B	특A	I	II	III	경
국 산	2.2	1.8	1.5	1.4	1.2	1.0	0.8
수 입	2.7	2.5	2.0	1.7	1.4	1.2	1.0

제8조(사용년 계수) 차량의 사용년수에 따른 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1. 국산차

사용년	당년~2년	3년	4년	5년~
계 수	1.0	0.9	0.8	0.7

2. 수입차

사용년	당년~2년	3~4년	5~6년	7년~
계 수	1.0	0.9	0.8	0.7

제9조(잔가율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타 물건 - 차량의 잔가율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승용, SUV, RV

사용년	당년 ~ 3년	4년	5년	6년	7년 ~
국산차	0.518	0.437	0.368	0.311	0.262
수입차	0.500	0.412	0.340	0.281	0.232

2. 승합, 화물

사용년	당년 ~ 3년	4년	5년	6년	7년 ~
국산차	0.510	0.426	0.357	0.298	0.250
수입차	0.510	0.426	0.357	0.298	0.250

1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10조(기준가격) 기준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 발표하는 기준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신차출시 시기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발표 시기가 다른 경우 또는 내용년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 적용한다.

기준가격 산출식
$\text{최초 기준가액} \times \text{감가율 계수의 감가율}(\%)$

1. 최초 기준가액은 신차 출고 시 신차가격(부가세 포함)을 말한다.
2. 감가율 계수 산출식 = $11 + (\text{사용년} \times 12) + \text{평가월 수}$
3. 감가율은 제4호의 감가율표에서 감가율 계수에 상응하는 감가율을 적용한다.

1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11조(기준가격 보정) 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월별시세변동의 보정이 필요하거나 차량 특성값(제작사의 신차할인 프로모션, 인기도, 연료, 거래량, 신차 및 신모델 출시, 단종 등)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정 가액을 산출한다.

1. ㉠월별 보정(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발표되는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을 월별 기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월별 감가율을 적용하여 월별 보정가액을 산출한다.

가. 월별 감가율(%)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월별감가율	1	2	1	2	1	2	1	2

※ 매 분기 첫 번째 월은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월별 보정 산출식

$$\text{㉠월별 보정}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월별 감가율}$$

2. ㉢특성값 보정 (특성값이 있는 경우만 적용)

제작사의 신차할인 프로모션, 인기도(차종, 연료, 거래량, 신차 및 신모델 출시) 등의 특성값을 확인하여 특성값 보정가액을 산출한다.

가. 프로모션(인기도) 감가액

구 분	프로모션(인기도) 감가액
800만원 이상~	800만원
600만원 이상~800만원 이내	600만원
400만원 이상~600만원 이내	400만원
200만원 이상~400만원 이내	200만원
200만원 이내	100만원

1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특성값 보정 산출식

$$\text{㉔특성값 보정} = \text{프로모션(인기도) 감가액} \times \text{잔가율(\%)}$$

※ 협회 가격조사산정위원회는 보정가격을 조사, 산출하여 보정가격을 발표하며 단, 발표된 보정가격이 객관적 보정이 필요한 경우 평균 시세가격, 인기도(차종, 연료, 거래량, 신차 및 신모델 출시) 등의 객관적 특성값을 조사하여 가격조사산정자는 기준가격을 보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정가격) 보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발표하는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시세와 차이를 분석하여 보정한 가격으로 평가항목의 가, 감 산출식에 기본이 되는 가격이다.

1. 보정가격 산출식

보정가격 산출식

$$\text{보정가격} = \text{기준가격} - \text{㉓월별 보정} - \text{㉔특성값 보정}$$

2. 전년도 보정가격

전년도의 보정가격은 평가년도의 보정가격의 13%를 더한 가격으로 한다.

■ II. 자동차종합상태

제13조(주행거리 평가)	19
제14조(차대번호 표기 평가)	20
제15조(배출가스 평가)	20
제16조(튜닝 평가)	21
제17조(특별이력 평가)	22
제18조(용도변경 평가)	22
제19조(색상 평가)	23
제20조(옵션 평가)	24

1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II. 자동차종합상태

제13조(주행거리 평가) 가격조사산정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평가는 실 주행거리와 표준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표준보다 적을 경우 가점하고, 많을 경우 감점하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행거리 산정 원칙

- 가. 주행거리는 주행거리 표시기에 표시된 수치를 실 주행거리로 산정한다.
- 나. 주행거리 표시기가 고장인 경우, 조작흔적이 있는 경우는 보정가격의 30%를 감점한다.
- 다. 주행거리계가 교환되었을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4항 검사 유효기간란의 마지막 정기 검사일에 기록된 주행거리에 현재 주행거리계의 수치를 합하여 산정한다.
- 라. 주행거리 단위는 km를 사용하고, 마일(mile) 단위인 경우 km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1 mile \Rightarrow 1.6 km)

2. 표준 주행거리 산정 원칙

- 가. 표준 주행거리는 승용차의 경우 1년 2만km를, 화물차인 경우 1년 3만km를 적용한다.
- 나. 표준 주행거리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text{ 승용, SUV, RV의 표준 주행거리} = \text{사용월 수} \times 1.66 \times 1,000$$

$$(2) \text{ 화물차의 표준 주행거리} = \text{사용월 수} \times 2.5 \times 1,000$$

2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주행거리 가 · 감점 산출

가. 승용, SUV, RV

$$\underbrace{(\text{전년도 보정가격} - \text{평가년도 보정가격}) \div 20}_{\text{(A)항}} \times \underbrace{(\text{표준주행거리} - \text{실제주행거리}) \div 1,000}_{\text{(B)항}} \times \text{잔가율}_{\text{(C)항}}$$

나. 화물차

$$\underbrace{(\text{전년도 보정가격} - \text{평가년도 보정가격}) \div 30}_{\text{(A)항}} \times \underbrace{(\text{표준주행거리} - \text{실제주행거리}) \div 1,000}_{\text{(B)항}} \times \text{잔가율}_{\text{(C)항}}$$

- (1) (A)항의 계산값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 (2) (B)항의 계산값은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 (3) (C)항은 제9조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4) 주행거리 평가 가점은 보정가격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감점은 보정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5) 사고수리이력 B랭크(&) 손상이 있는 경우는 가점하지 않는다.

제14조(차대번호 표기 평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와 실 차량의 차대번호를 비교하여 동일성 확인과 부식, 훼손, 상이, 변조, 도말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계수를 아래와 같이 적용 평가한다.

항 목	불 량	감점 계수
차대번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 재 타각이 가능한 경우	20

제15조(배출가스 평가) 평가차량의 배출가스검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별표21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표준적인 정비비용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2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배출가스 검사 감점표

항 목	불 량	감점 계수
HC, CO	가솔린	60
매연	디젤	120

제16조(튜닝 평가) 평가차량의 구조장치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경우 감점 적용하고, 구조장치 변경승인(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가점할 수 있다.

1. 불법 튜닝 감점 산출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 계수표

구 분	감점 계수
장치	80
구조	120

3. 적법 튜닝 가점 산출

$$\text{튜닝 비용} \times \text{잔가율} \times \text{사용년 계수}$$

※ 튜닝 비용 : 실비적용(자동차튜닝부품 인증부품 : <http://www.cartuning.kr>)

2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17조(특별이력 평가) 평가차량의 침수, 화재 등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별 기준에 의해 감점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감점률}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손상이력 감점

구 분	감 점 률
침수 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 조회)	40%
화재 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 조회)	40%

3. 수리이력 감점

구 분	감 점 률
전손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 조회)	10%
수리이력 (보험사고수리이력과 차량수리상태 상이)	7%

※ 수리이력 감가는 보험이력 조회 시 공임을 제외한 부품가격만 적용하여 국산차는 100만원,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 조회시 적용한다. 단, 사고수리이력 평가 항목 중 외관부위 2랭크이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4. 특수사용이력 감점

특수사용이력	감 점 률
특수사용손상 (공사장 운용차량, 수산물 운송차량, 기타)	40%

제18조(용도변경 평가) 평가차량의 용도변경이력 중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별 기준에 의해 감점한다.

1. 감점산출 공식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감점률} \times \text{사용년 계수}$$

2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감점률표

변경 이력	감점률
렌터카 이력	7%
영업용 이력	15%
관용 이력	7%
직수입 이력	15%

※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 관용 이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색상 평가) 평가차량의 출고 시 색상에 따라 기본색상 평가를 하고, 전체도색 및 색상변경 등의 이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다만, 승합차, 화물차는 감점하지 않는다.

1. 기본색상 평가

구 분		감점율
기본 색상 평가	① 무채색 계열	감점 없음
	② 유채색 계열	유채색 감가액 × 사용년 계수
색상 변경 평가	③ 전체 도색[제작사의 표준색]	보정가격 × 3% × 사용년 계수
	④ 색상 변경[출고 시와 다른 색상]	보정가격 × 6% × 사용년 계수
※ 색상변경 평가는 I 등급 이상 유채색의 경우 감가액의 1/2만 감점		

2. 유채색 감가액

제조국	등급	특C	특B	특A	등급			경
					I	II	III	
국산차		170	150	130	100	-	-	-
수입차		240	220	200	170	-	-	-

2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색상 분류 기준

구분	세부 색상
무채색 계열	흰색, 검정색, 은색, 쥐색
유채색 계열	무채색 외의 색상 [빨강, 파랑, 주황색 등]

제20조(옵션 평가) 주요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적용한다. 단 기본옵션과 선택(패키지)옵션이 중복될 경우 선택(패키지)옵션만 가점 적용하며 고장, 분실의 경우는 각각 감점한다.

1. 기본옵션

기본옵션으로 추가 장착되어 있으며 네비게이션과 쉐루프 옵션이 중복될 경우 쉐루프 옵션만 가점 적용한다. (※ 순정품 기준가를 적용한다)

(1) 네비게이션

구분/사용년	1년		2~3년		4~5년		6년~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네비게이션	60		50		40		30	
불량[실비]	실비감점(견적액 × 0.9)							

가. 경 등급부터 1등급 차량까지만 가점을 적용하고, 특 A, B, C 등급은 가점하지 않는다.

나. 가점대상 네비게이션이 불량인 경우에는 가호에 따라 가점한 후 감점을 적용한다.

(2) 쉐루프

구분/사용년	1년		2~3년		4~5년		6년~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쉐루프	70	0	60	0	50	0	40	0
파노라마 쉐루프	80	0	70	0	60	0	50	0
불량[실비]	실비감점(견적액 × 0.9)							

2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선택(패키지)옵션

기준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안전장치, 편의장치가 선택(제조사 패키지) 옵션으로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 적용한다.

가. 가점 산출 공식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가점율}$$

나. 가점율표

구분/사용년	1년	2년 ~3년	4년~5년	6년~
안전 장치	15%	13%	11%	9%
편의 장치	10%	8%	6%	4%
불량실비	실비감점(견적액 × 0.9)			

※ 선택(패키지)옵션 중 안전장치와 편의장치가 중복되어 장착된 경우 가점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 패키지 옵션 구분표

안전 장치	에어백(커튼), 브레이크잠김방지(ABS), 미끄럼방지(TCS), 차체자세 제어 장치(ESC), 타이어 공기압센서(TPMS),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주차감지센서(전방, 후방), 후측방 경보 시스템,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편의 장치	크루즈 컨트롤(일반,어댑티브),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자동 에어컨, 스마트키, 무선도어 잠금장치, 레인센서, 오토 라이트, 커튼/블라인드(뒷좌석, 후방), 내비게이션,AV 모니터블루투스, CD 플레이어, USB 단자, AUX 단자, 시트가죽시트, 전동시트(운전석, 동승석), 전동시트(뒷좌석), 열선시트(앞좌석, 뒷좌석), 메모리 시트(운전석, 동승석), 통풍시트(운전석, 동승석), 통풍시트(뒷좌석)마사지 시트

2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III.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제21조(상태표시)	29
제22조(사고·수리이력 평가 및 랭크별 적용계수)	29

2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Ⅲ.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제21조(상태표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란의 상태표시는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교환이나 용접 또는 수리 등 수리흔적이 있는 해당부위에 상태표시 부호를 그림 내부에 표기한다. 이 경우 ⑫사고이력, ⑬부위별 이상여부, ⑭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란에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한다. 수리필요 부호는 제25조 외장상태에 따라 평가부호를 주요상태 및 성능표시(그림 외부)에 표기한다.

1. 상태표시 부호 [과거 사고수리 흔적에 대한 표시 부호]는 그림 내부에 다음 부호로 표시한다.
 - 가. 교환 : X
 - 나. 용접 : W

제22조(사고·수리이력 평가 및 랭크별 적용계수)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상품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외관[1&, 2&]과 주요골격[A&, B&, C&]의 수리에 대하여 감가를 적용하며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미수리차량은 판금, 용접, 수리 또는 교환을 요하는 부위의 견적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1. 사고수리이력 감가액 산출공식

$$\frac{\sqrt{\text{보정가격} \times \text{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4.8} \times \text{랭크별 적용계수}$$

- 가. 교환수리(X)는 부위별로 각각 사고수리 이력 감가계수를 적용하고, 1랭크(&) 부위 중 단순교환(1개부위)의 경우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의 50%를 적용한다.(감가계수 : 제5호 참조)
- 나. 판금·용접수리(W)는 부위별로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의 50%를 적용한다.(감가계수 : 제5호 참조)
- 다. 사고수리이력이 있는 부위가 2개 이상의 랭크에 해당할 경우 이중 높은 랭크의 계수를 적용한다. (랭크별 적용계수 : 제4호 참조)
- 라. 차대가 프레임 방식 중 (cab)ASSY교환 차량은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한다.

$$\text{보정가격} \times \text{감점률(10\%)} \times \text{사용년 계수}$$

3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2. 사고수리 이력 판단기준

가. 교환 (X)

- 볼트로 체결된 부품은 볼트가 전부 풀린 흔적과 색차이가 있는 경우
- 스폿용접으로 체결된 부위는 제작시 스폿용접 흔적과 비교시 상이한 경우

나. 판금 및 용접(W)

- 부품 교환 없이 판금 및 용접수리를 한 경우

3. 사고이력에 따른 랭크 분류

랭크분류	적용 부위	평가 기준
1랭크(&)	1. 후드	- 교환여부(X) - 볼트가 전부 풀렸거나, 해당부품 색 차이 여부(X) - 판금, 용접수리 여부(W)
	2. 프런트 웬더	
	3. 도어	
	4. 트렁크 리드	
	5. 라디에이터 서포트볼트체결	
2랭크(&)	6. 쿼터 패널(리어웬더)	- 교환여부(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7. 루프 패널	
	8. 사이드 실 패널	
A랭크(&)	9. 프런트 패널	- 교환여부 (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10. 크로스 멤버(용접부품)	
	11. 인사이드 패널	
	17. 트렁크 플로어 패널	
B랭크(&)	12. 사이드 멤버	- 교환여부 (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13. 휠 하우스	
	14. 필러 패널	
	19. 패키지 트레이	
C랭크(&)	15. 대쉬 패널	- 교환여부 (X) - 용접수리 여부(W) - 해당 부품이 구겨진 흔적이나 망치로 핀 자국이 있는 경우(W)
	16. 플로어 패널	

3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4. 랭크별 적용계수

(1) 승용, SUV, RV

랭크(&) 제조국	1	2	A	B	C
국산차	1.0	1.4	1.6	1.8	2.0
수입차	1.0	1.4	1.6	1.8	2.0

(2) 승합 · 화물

랭크(&) 제조국	1	2	A	B	C
국산차	0.8	0.9	1	1.4	1.6
수입차	0.8	0.9	1	1.4	1.6

3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5. 사고수리이력 감가계수

자동차의 손상정도에 따른 외관·골격부위의 수리정도를 부품가격, 수리공임, 도장공임 등을 참조하여 손상성, 수리성에 대해 산출된 계수로서 보험개발원 사고수리견적시스템 AOS (Areccom on-line system) 수리비, 지역 평균 공임 등을 참조하여 산출한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가. 승 용

NO	적용부위	차량등급		특C		특B		특A		I		II		III		경		랭크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120	240	108	216	100	200	80	160	64	128	52	104	40	80				
2	프런트헨더	60	120	54	108	50	100	40	80	32	64	26	52	20	40				
3	도어[Fr]	90	180	81	162	75	150	60	120	48	96	39	78	30	60			1	
4	도어[Rr]	81	162	73	146	68	135	54	108	43	87	36	71	27	54				
5	트렁크리드	75	150	68	135	63	125	50	100	40	80	33	65	25	50				
6	라디에이터 썬포트	45	90	41	81	38	75	30	60	24	48	20	39	15	30				
7	쿼터패널 [리어헨더]	156	312	140	281	130	260	104	208	83	167	68	136	52	104				
8	루프패널	165	330	149	297	138	275	110	220	88	176	72	143	55	110			2	
9	사이드실패널	96	192	86	173	80	160	64	128	51	103	42	84	32	64				
10	프런트패널	144	288	130	260	120	240	96	192	77	154	63	125	48	96				
11	크로스멤버[용접부품]	75	150	68	135	63	125	50	100	40	80	33	65	25	50				
12	인사이드패널	105	210	95	189	88	175	70	140	56	112	46	91	35	70			A	
13	트렁크플로어	168	336	151	303	140	280	112	224	90	180	73	146	56	112				
14	리어패널	81	162	73	146	68	135	54	108	43	87	36	71	27	54				
15	사이드멤버[Fr]	150	300	135	270	125	250	100	200	80	160	65	130	50	100				
16	사이드멤버[Rr]	126	252	113	227	105	210	84	168	67	135	55	110	42	84				
17	휠 하우스[Fr]	156	312	140	281	130	260	104	208	83	167	68	136	52	104				
18	휠 하우스[Rr]	129	258	116	233	108	215	86	172	69	138	56	112	43	86			B	
19	A 필러패널	132	264	119	238	110	220	88	176	70	141	58	115	44	88				
20	B 필러패널	126	252	113	227	105	210	84	168	67	135	55	110	42	84				
21	C 필러패널	120	240	108	216	100	200	80	160	64	128	52	104	40	80				
22	패키지트레이	90	180	81	162	75	150	60	120	48	96	39	78	30	60				
23	대쉬 패널	150	300	135	270	125	250	100	200	80	160	65	130	50	100				
24	플로어 패널	132	264	119	238	110	220	88	176	70	141	58	115	44	88			C	

3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SUV

NO	적용부위	차량등급		특C		특B		특A		I		II		III		경		랭크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130	260	118	236	110	220	74	266	66	234	58	202	50	100				
2	프런트휀더	70	140	64	128	60	120	54	186	48	162	43	142	37	74				
3	도어[Fr]	100	200	91	182	85	170	71	254	64	226	56	194	48	96				1
4	도어[Rr]	91	182	83	166	78	155	70	250	62	218	55	190	47	94				
5	트렁크리드	85	170	78	155	73	145	64	226	57	198	51	174	44	88				
6	라디에이터 썬포트	55	110	51	101	48	95	37	118	34	106	30	90	27	54				
7	쿼터패널 [리어휀더]	166	332	150	301	140	280	93	342	83	302	72	258	62	124				
8	루프패널	175	350	159	317	148	295	98	362	87	318	76	274	65	130				2
9	사이드실패널	106	212	96	193	90	180	62	218	55	190	49	166	42	84				
10	프런트패널	154	308	140	280	130	260	86	314	77	278	67	238	58	116				
11	크로스멤버[용접부품]	85	170	78	155	73	145	50	170	45	150	40	130	35	70				
12	인사이드패널	115	230	105	209	98	195	66	234	59	206	52	178	45	90				A
13	트렁크플로어	178	356	161	323	150	300	99	366	88	322	77	278	66	132				
14	리어패널	91	182	83	166	78	155	53	182	48	162	42	138	37	74				
15	사이드멤버[Fr]	160	320	145	290	135	270	90	330	80	290	70	250	60	120				
16	사이드멤버[Rr]	136	272	123	247	115	230	78	282	69	246	61	214	52	104				
17	휠 하우스[Fr]	166	332	150	301	140	280	94	346	83	302	73	262	62	124				
18	휠 하우스[Rr]	139	278	126	253	118	235	79	286	71	254	62	218	53	106				B
19	A 필러패널	142	284	129	258	120	240	81	294	72	258	63	222	54	108				
20	B 필러패널	136	272	123	247	115	230	78	282	69	246	61	214	52	104				
21	C 필러패널	130	260	118	236	110	220	74	266	66	234	58	202	50	100				
22	패키지트레이	98	362	94	346	90	330	81	294	72	258	63	222	54	108				
23	대쉬 패널	160	320	145	290	135	270	90	330	80	290	70	250	60	120				
24	플로어 패널	142	284	129	258	120	240	81	294	72	258	63	222	54	108				C

3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다. RV

NO	적용부위 차량등급	특C		특B		특A		I		II		III		경		랭크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125	250	113	226	105	210	85	170	69	138	57	114	45	90	1
2	프런트헨더	65	130	59	118	55	110	45	90	37	74	31	62	25	50	
3	도어[Fr]	95	190	86	172	80	160	65	130	53	106	44	88	35	70	
4	도어[Rr]	86	172	78	156	73	145	59	118	49	97	41	81	32	64	
5	트렁크리드	80	160	73	145	68	135	55	110	45	90	38	75	30	60	
6	라디에이터 썬포트	50	100	46	91	43	85	35	70	29	58	25	49	20	40	
7	쿼터패널 [리어헨더]	161	322	146	291	135	270	109	218	89	177	73	136	57	114	2
8	루프패널	170	340	154	307	143	285	115	230	93	186	77	146	60	120	
9	사이드실패널	101	202	92	183	85	170	69	138	57	113	47	94	37	74	
10	프런트패널	149	298	135	270	125	250	101	202	82	164	68	135	53	106	A
11	크로스멤버[용접부품]	80	160	73	145	68	135	55	110	45	90	38	75	30	60	
12	인사이드패널	110	220	100	199	93	185	75	150	61	122	51	101	40	80	
13	트렁크플로어	173	346	157	313	145	290	117	234	95	190	78	156	61	122	
14	리어패널	86	172	78	156	73	145	59	118	49	97	41	81	32	64	B
15	사이드멤버[Fr]	155	310	140	280	130	260	105	210	85	170	70	140	55	110	
16	사이드멤버[Rr]	131	262	119	237	110	220	89	178	73	145	60	120	47	94	
17	휠 하우스[Fr]	161	322	146	291	135	270	109	218	89	177	73	146	57	114	
18	휠 하우스[Rr]	134	268	122	243	113	225	91	182	74	148	61	122	48	96	
19	A 필러패널	137	274	124	248	115	230	93	186	76	151	63	125	49	98	
20	B 필러패널	131	262	119	237	110	220	89	178	73	145	60	120	47	94	
21	C 필러패널	125	250	113	226	105	210	85	170	69	138	57	114	45	90	C
22	패키지트레이	155	310	140	280	130	260	105	210	85	170	70	140	55	110	
23	대쉬 패널	137	274	124	248	115	230	93	186	76	151	63	125	49	98	
24	플로어 패널	103	367	99	351	95	335	86	299	77	263	68	227	59	191	

3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라. 승합

NO	적용부위	차량등급	특B		특A		랭크 (적용계수)
			국산	수입	국산	수입	
1	후드		85	170	69	138	1
2	프런트웬더		45	90	37	74	
3	도어[Fr]		65	130	53	106	
4	도어[Rr]		59	118	49	97	
5	트렁크리드		55	110	45	90	
6	라디에이터써포트[볼트체결]						
7	쿼터패널[리어웬더]		109	218	89	177	2
8	루프패널		115	230	93	186	
9	사이드실패널		69	138	57	113	
10	프런트패널		101	202	82	164	A
11	크로스멤버		55	110	45	90	
12	인사이드패널		75	150	61	122	
13	트렁크플로어		117	234	95	190	
14	리어패널		59	118	49	97	
15	사이드멤버[Fr]		105	210	85	170	B
16	사이드멤버[Rr]		89	178	73	145	
17	휠 하우스[Fr]		109	218	89	177	
18	휠 하우스[Rr]		91	182	74	148	
19	A 필러패널		93	186	76	151	
20	B 필러패널		89	178	73	145	
21	C 필러패널		85	170	69	138	C
22	대쉬 패널		93	186	76	151	
23	플로어 패널		86	299	77	263	

3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마. 화물

NO	적용부위 차량등급	국산					수입					랭크 (적용계수)
		특C	특B	특A	I	경	특C	특B	특A	I	경	
1	후드	37	34	30	25	23						1
2	프런트헤더	33	25	21	16	13						
3	도어[Fr]	44	41	37	32	29						
4	도어[Rr]	43	41	37	32	29						
5	트렁크리드	-	-	-	-	-						
6	라디에이터썬포트 [볼트체결]	-	-	-	-	-						
7	쿼터패널[리어헤더]	57	54	50	45	42						2
8	루프패널	80	77	73	68	65						
9	사이드실패널	27	24	20	15	12						
10	프런트패널	50	47	43	38	35						A
11	크로스멤버	23	20	16	11	8						
12	인사이드패널	34	31	27	22	19						
13	트렁크플로어	-	-	-	-	-						
14	리어패널	59	54	50	45	42						
15	사이드멤버[Fr]	67	64	60	55	52						B
16	사이드멤버[Rr]	-	-	-	-	-						
17	휠 하우스[Fr]	42	39	35	32	29						
18	휠 하우스[Rr]	-	-	-	-	-						
19	A 필러패널	50	47	43	38	35						
20	B 필러패널	59	56	52	47	39						
21	C 필러패널	62	59	55	50	47						
22	대쉬 패널	48	45	41	36	33						C
23	플로어 패널	67	64	60	55	52						

■ IV. 자동차 세부상태

제23조(주요장치 성능평가)	39
제24조(주요장치 성능감점계수 산출)	40

3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IV. 자동차 세부상태

제23조(주요장치 성능평가) 자동차 세부상태란의 주요장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상태별 감점계수표에 따라 평가한다.

1. 주요장치 상태별 구분 표시

가. 양호 : 차량상태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로 감점하지 않는다

나. 보통 : 차량상태 점검결과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은 가치감기를 적용한다.
(미세누수(유) 등) 단, 사용년 8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15만km 이상 차량은 감점하지 않는다

다. 불량 : 차량상태 점검결과 부품 교환 등 수리가 필요한 상태(정비요, 과다, 부족 등)

2. 주요장치별 감가액 산출 공식

$$\text{주요장치 평가항목별 감점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가. 주요장치 평가항목별 감점계수 : 세부평가항목별 감점계수의 합

나. 사용년 계수 : **제8조의** 사용년 계수를 적용

4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3. 주요장치 성능 감점 계수표

주요장치	평가항목	상태	보통		불량											
			공통		특C특B		특A		1		2		3		경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자기진단	원동기		-	-	40	120	40	120	30	90	25	75	25	75	25	75
	변속기		-	-	60	180	60	180	50	150	50	150	50	150	40	120
원동기	엔진오일	로커암커버 누유	5	20	40	12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헤드가스켓 엔진오일누유	10	30	80	240	80	240	60	180	50	150	40	120	40	120
		오일팬 엔진오일누유	5	20	30	9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엔진오일 유량	-	-	40	12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냉각수	실린더 헤드 / 가스켓냉각수누수	10	30	80	240	80	240	60	180	60	180	50	150	50	150
		워터펌프 냉각수 누수	10	30	60	180	50	150	40	120	40	120	40	120	35	105
		라디에이터 냉각수 누수	-	-	60	180	50	150	40	120	40	120	40	120	35	105
		냉각수 수량	-	-	50	15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고압펌프(디젤)	-	-	120	360	120	360	120	360	120	360	120	360	-	-
		작동상태(공회전)	-	-	300	900	200	600	150	450	120	360	120	360	120	360
변속기	변속기 오일 상태	자동 변속기 오일 누유	10	30	50	15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수동 변속기 오일 누유	10	30	50	150	40	120	30	90	30	90	30	90	30	90
		자동 변속기 오일 유량	-	-	30	90	25	75	20	60	20	60	20	60	20	60
		수동 변속기 오일 유량	-	-	30	90	25	75	20	60	20	60	20	60	20	60
	작동 상태	자동 변속기	-	-	200	600	150	450	120	360	120	360	110	330	100	300
		수동 변속기 (기어변속)	-	-	200	600	150	450	120	360	120	360	110	330	100	300
동력전달장치	작동 상태	클러치어셈블리	-	-	50	150	40	120	40	120	40	120	40	120	30	90
		등속조인트	-	-	30	90	25	75	20	60	20	60	20	60	20	60
		추진축 및 베어링			40	120	35	105	30	90	30	90	30	90	30	90
		디퍼런셜기어			50	150	50	150	50	150	50	150	50	150	50	150
조향장치	조향장치 오일상태	스티어링기어 오일누유	10	30	120	360	120	360	120	360	100	300	100	300	90	270
	작동 상태	스티어링기어(mdps포함)	-	-	120	360	120	360	120	360	100	300	100	300	90	270
		스티어링 펌프	-	-	50	150	40	120	35	105	30	90	30	90	25	75
		타이로드엔드및볼조인트			40	12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스티어링조인트			50	150	40	120	35	105	30	90	30	90	25	75
	파워고압호스			40	120	30	90	20	60	20	60	20	60	20	60	
제동장치	작동 상태	마스터 실린더오일누유	-	-	40	120	40	120	40	120	35	105	30	90	30	90
		브레이크오일누유	-	-	30	90	30	90	30	90	30	90	25	75	20	60
		베력장치 상태	-	-	60	180	60	180	60	180	50	150	40	120	35	105
전기장치	작동 상태	발전기	-	-	30	90	30	90	30	90	25	75	25	75	25	75
		시동 모터	-	-	30	90	30	90	30	90	25	75	25	75	25	75
		와이퍼 모터	-	-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송풍 모터	-	-	40	120	40	120	40	120	35	105	35	105	35	105
		라디에이터 팬 모터	-	-	30	90	30	90	30	90	30	90	30	90	30	90
		윈도우 모터	-	-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20	60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상태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구동축전지격리상태			300	500	300	500	300	500	300	500	300	500	300	500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연료장치	연료누출			160	480	120	360	100	300	80	240	80	240	60	180	

제24조(주요장치 성능 감점계수 산출) 주요장치별 상태에 따른 가격조사 · 산정액 산출은 주요장치별로 각각 감점한다.

■ V. 자동차 기타정보

제25조 (외장 상태 평가)	43
제26조 (광택 평가)	45
제27조 (내장 상태 평가)	45
제28조 (룸 크리닝 평가)	46
제29조 (휠 상태 평가)	46
제30조 (타이어 상태 평가)	47
제31조 (유리 평가)	48
제32조 (기본품목 평가)	49
제33조의2 (자동차기타정보 가격조사산정액 산출법)	49

4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V. 자동차 기타정보

제25(외장상태) 외장상태평가는 평가자동차의 외관, 주요골격의 상태를 표준상태의 차량과 비교하여 수리필요 부위에 부호로 표시하고, 평가 시 해당 계수를 감점한다. 부호 표시는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란의 그림 외부에 표시한다.

1. 외관, 주요골격 평가 시 상태표시 부호(평가기호)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호	적용기준
A (abrasion)	기능에 영향이 없고, 통상 수리에 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손상 또는 결점에 대해서 적용한다.
U (unevenness)	외관 패널, 주요골격의 찌그러짐, 충격 상태로 판금, 보수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C (corrosion)	수분 등으로 인하여 금속 고유의 형질이 변형된 상태로 판금 및 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T (tear)	깨짐, 균열, 손상, 부식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외장상태평가 감가액 산출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3. 적용부위별 평가기준 및 감점계수

가. 외관[1&, 2&]

평가기준	평가	감 점 계 수	
		국산	수입
①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내의 손상 상태 ② 동전(지름 5cm)크기 정도 이내의 요철이나 부식된 상태 ※ 외관 부위에 3곳 이상 발생 시 수리(U)로 평가한다.	A	5	10
①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손상 상태 ② 동전(지름 3cm)크기 정도 이상의 요철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U	10	20
동전(지름 5cm)크기 정도 이상의 외관부식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C	10	20
외관부위에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손상, 부식, 찌그러짐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T	제22조5호의 감가계수 적용	

4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주요 골격 상태 평가[A&, B&, C&]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내의 하체 부식, 전체적으로 초기의 부식 상태로 언더코팅으로 부식 방지 가능한 상태 ※ 주요골격 부위에 3개 부위이상인 경우 교환(T)으로 평가한다	C	15	30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하체 부식[구멍·박리]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T	제22조 5호의 감가계수 적용	
찌그러짐[충격]	U	10	20

다. 기타

1) 범퍼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내의 상처나, 동전지름 5cm)크기 정도 이내의 판금이나 외판부식 상태	A	5	10
신용카드(5cm × 10cm) 크기 정도 이상의 상처나 찌그러짐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U	10	20
A4(21cm × 30cm) 크기 정도 이상의 상처 부식, 찌그러짐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T	30	210

2) 백미러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가벼운 마찰흔집, 변색 등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A	5	10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	T	10	100

3) 헤드램프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가벼운 마찰흔집 변색 그늘음 등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	A	10	20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	T	15	150

4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4) 리어 콤비네이션램프

평가기준	평가	감점계수	
		국산	수입
가벼운 마찰흡집 등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A	5	10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	T	10	100

제26조 (광택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 계수표

평가기준	감점계수	
	국산	수입
변퇴색이 없고 터치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손톱으로 긁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스처 생긴 손상 또는 타르의 부착, 물때의 오염이 있는 경우 평가 차량 단위로 감점한다.	10	20

제27조 (내장상태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적용부품별로 깨짐, 균열, 손상, 소실 등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감점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계수표

주요내장부품	감점계수	
	국산	수입
불량	50	100
대시보드, 시트, 바닥내부, 천장내부, 도어내부 수리, 교환 필요		

4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28조 (룸 크리닝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평가 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text{감점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2. 감점계수표

평가기준	감점 계수	
	국산	수입
수지제 부분의 가벼운 상처, 실, 테이프 등의 흔적이 있거나, 담배, 애완견 등에 의한 냄새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차량 단위로 감점한다.	15	30

제29조 (휠 상태평가) 평가 차량의 휠의 상태가 교환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평가 기준

평가기호	평가기준
A (abrasion)	가벼운 미찰흔집 등 통상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경우
T (tear)	흔집, 부식, 균열, 변형 등 결함이 있거나 디자인 사이즈 규격이 다를 경우

2. 감점 산출 공식

$$A : \text{감점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T : \text{감점계수}$$

3. 차종별 감점계수

가. 승용

휠 구분(등급) \ 상태	A		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B. C	22	30	26	60
I . II	18	25	22	50
III. 경	14	20	18	40

47.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SUV / RV

휠 구분(등급) \ 상태	A		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B. C	24	30	30	80
I . II	20	25	26	60
III. 경	16	20	22	50

다. 화물차/승합

휠 구분(등급) \ 상태	A		T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B. C	-	미적용	24	미적용
I	-		20	
II	-		16	
III. 경	-		12	

제30조(타이어 상태평가) 평가차량의 타이어는 다음 원칙과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평가 기준

평가기호	평가기준
A (abrasion)	트레이드 남은 홈 깊이가 5mm(50% 정도) 이하,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상태
T (tear)	트레이드 남은 홈 깊이가 1.6mm이하의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 ※ 균열, 측면 마모, 토우 마모 등 편 마모인 것은 남은 홈에 관계 없이 1.6mm미만의 감점을 한다.

2. 감점 산출 공식

A : 감점계수 × 사용년 계수, T : 감점계수

3. 차종별 감점계수

가. 승용

타이어 구분(등급) \ 상태	A		T		비상용 결품	
	남은 홈 [5mm 이하]		편마모 / 남은홈 [1.6mm이하]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B. C	25	50	30	60	15	30
I . II	20	40	25	50	13	25
III. 경	15	30	20	40	10	20

48.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나. SUV / RV

타이어 구분(등급)	상태	A		T			
		남은 홈 [5mm 이하]		편마모 / 남은홈 [1.6mm이하]		비상용 결품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B. C		35	70	40	80	20	40
I . II		25	50	30	60	15	30
III. 경		20	40	25	50	13	25

다. 화물차 승합

타이어 구분(등급)	상태	A		T		비상용 결품
		남은 홈 [5mm 이하]		편마모 / 남은홈 [1.6mm이하]		
		국산	수입	국산	수입	
특A .B. C		35		40		20
I		25	미적용	30	미적용	15
II		20		25		13
III. 경		15		20		10

제31조 (유리 평가) 평가차량의 상태를 표준상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감점 산출 공식

$$A : \text{감점계수} \times \text{사용년 계수}, \quad T : \text{감점계수}$$

2. 감점기준 및 계수

평가기호	평가기준	감점계수	
		국산	수입
A (abrasion)	가벼운 마찰홈집 등 상 거래상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상태[별 모양 1곳]	15	100
T (tear)	균열 변형 디자인 규격 등 결함이 있는 경우는 교환으로 한다	30	200

49.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제32조 (기본품목 평가) 사용설명서, 공구, 잭세트, 삼각대 등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점 적용한다.

기본품목	감점계수	
	국산	수입
사용설명서	5	10
안전삼각대	3	5
잭세트	5	10
공구(스패너)	3	5

제32조의2 (자동차 기타정보 가격조사 · 산정액 산출방법)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각각 산출된 가격조사산정금액을 합산하여 가격조사 · 산정액란에 기록한다.

5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VI. 기타의견 작성 및 조사산정 가격도출

제33조 (기타의견 작성)	53
제34조 (조사 · 산정가격 도출)	53
제35조 (조사 · 산정가격의 허용오차 범위)	53

5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Ⅵ. 기타의견 작성 및 조사산정가격

제33조 (기타의견 작성) 상기 평가내용 중 당해 차량을 구입후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예 : 특정부분 수리 또는 교환 등) 등을 기재한다.

제34조 (최종 가격조사 · 산정 금액 산출) 가격조사 ·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정가격에서 가감금액(자동차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세 부상태, 자동차 기타정보)를 합산하여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을 산출한다.

제35조 (조사 · 산정가격의 허용오차 범위) 조사산정가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조사산정가격의 $\pm 5\%$ 이내로 한다.

54.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별첨

1. 기준가격 감가율 계수표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 점검기록부(가격조사 산정서)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및 가격조사산정 체크리스트

56.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별첨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0. 6. 26.>

(1/5쪽)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① 차명	(세부모델 :)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연식	④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최초등록일	⑦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⑥ 차대번호									
⑧ 사용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기타								
⑨ 원동기형식	⑩ 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가격산정 기준가격			만원	
자동차 종합상태 (색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⑪ 사용이력	상 태			항목 / 해당부품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 []불량		현재 주행거리 []			만원			
	[]많음 []보통 []적음					만원			
차대번호 표기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만원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 ppm, %			만원			
튜닝	[]없음 []있음 []적법 []불법 []구조 []장치					만원			
특별이력	[]없음 []있음		[]침수 []화재			만원			
용도변경	[]없음 []있음		[]렌트 []영업용			만원			
색 상	[]무채색 []유채색		[]전체도색 []색상변경			만원			
주요옵션	[]있음 []없음		[]썬루프 []내비게이션 []기타			만원			
리콜대상	[]해당없음 []해당		리콜이행 []이행 []미이행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상태표시 부호 : X (교환), W (판금 또는 용접), C (부식), A (흠집), U (오철), T (손상) ※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⑫ 사고이력(유의사항 4 참조)	[]없음 []있음			단순수리			[]없음 []있음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외판부위	1랭크	[] 1. 후드 [] 2. 프론트펜더 [] 3. 도어 [] 4. 트렁크 리드 [] 5. 라디에이터서포트(볼트체결부품)					만원		
	2랭크	[] 6. 쿼터패널(리어펜더) [] 7. 루프패널 [] 8. 사이드실패널							
주요골격	A랭크	[] 9. 프론트패널 [] 10. 크로스멤버 [] 11. 인사이드패널 [] 17. 트렁크플로어 [] 18. 리어패널							
	B랭크	[] 12. 사이드멤버 [] 13. 휠하우스 [] 14. 필러패널 ([]A, []B, []C) [] 19. 패키지트레이							
	C랭크	[] 15. 대쉬패널 [] 16. 플로어패널							

59.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2/5쪽)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⑭ 주요 장치	항목 / 해당부품	상 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자기진단	원동기	[]양호 []불량	만원		
	변속기	[]양호 []불량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만원		
	오일누유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블록 / 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 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 누수	실린더 헤드 / 개스킷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커먼레일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수동변속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기어변속장치	[]양호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만원		
	등속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디퍼렌셜 기어	[]양호 []불량			

60.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3/5쪽)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작동상태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양호 []불량
		스티어링조인트			[]양호 []불량
		파워고압호스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만원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만원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 상태		[]양호 []불량	만원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양호 []불량		
	고전원전기배선 상태 (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양호 []불량		
연료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만원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항 목				가격조사·산정액
수리필요	외장	[]양호 []불량	내장	[]양호 []불량	만원	
	광택	[]양호 []불량	룸 크리닝	[]양호 []불량		
	휠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타이어	[]양호 []불량	운전석	[]전 []후 / 동반석 []전 []후 / []응급		
	유리	[]양호 []불량				
기본품목	보유상태	[]있음 []없음 ([]사용설명서 []안전삼각대 []잭 []스패너)				

최종 가격조사·산정 금액 만원

이 가격조사·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⑮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성능·상태점검자	
	가격·조사산정자	

61.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㉔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체크항목 판단기준(예시)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7. 가격조사·산정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8. 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산정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업자는 가격조사·산정자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산정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산정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행된 것을 적용합니다.
10.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산정자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이란

※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62.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앞 면)

(뒷 면)

서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 · 산정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63.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별첨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및 가격조사 산정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성능상태점검, 가격조사산정]

자동차 기본정보									
① 차명	(세부모델 :)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연식	④ 검사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최초등록일				⑦ 변속기 종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⑥ 차대번호									
⑧ 사용연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기타								
⑨ 원동기형식	⑩ 보증유형	[]자가보증 []보험사보증		가격산정 기준가격					만원
자동차 종합상태									
⑩ 사용이력	상 태			항목 / 해당부품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양호 []불량 (□ 교환)			현재 주행거리 []					
	[]많음 []보통 []적음								
차대번호 표 기	[]양호 []부식 []훼손(오손) []상이 []변조(변타) []도말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흡기 □	배기 □	연료□	흡기 □	배기 □	연료□	흡기 □	배기 □	연료□
튜닝	[]없음 []있음								
	[]적법			[]불법(구조)			[]불법(장치)		
	□ 연료구조변경이력			□ 새시구조 □ 바디구조			□ 원동기 □ 주행 □ 제동 □ 연결 □ 승차 □ 적재 □ 차대/차체		
특별이력	[]없음 []있음								
	[]침수 [] 화재			□ 전손 □ 수리			□ 특수사용 □ 연료사용		
	(□ 추정 □ 이력조회)			(□ 이력조회)			() () LPG, LNG 일반사용 (사용연수 년)		
용도변경	[]없음 []있음			[]렌트 []리스 []영업용 []직수입					
색 상	[]무채색 []유채색			[]전체도색 []색상변경					
주요옵션	[]썬루프(□일반 □파노라마)			[]내비게이션			[]기타(비상키 분실)		
	[]있음 []없음 (□ 불량)			[]있음 []없음 (□ 불량)			[]있음 []없음 (□ 불량)		
기타 사양	전동시트(좌[] / 우[])								
	열선시트(앞[] / 뒤[])								
	에어백(1개()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 / 불량□)								
	HID □ 전동접미 미러□ 후방감지 센서□ EPS 핸들□ ECM 룸미러□ 가죽시트□ 메모리시트□ 통풍시트 □ ABS□ TCS□ 자동에어컨□ 스마트키□ CD체인저□								

65. 자동차 가격조사 · 산정 기준서

자동차 세부상태 (가격조사 · 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 ·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요 장치	항목 / 해당부품	상 태	세부상태
자기전단	원동기	[]양호 []불량	<input type="checkbox"/> 흡입공기유량센서 <input type="checkbox"/> 공전속도제오센서 <input type="checkbox"/> 냉각수온도센서 <input type="checkbox"/> 스로로틀 위치센서
	변속기	[]양호 []불량	<input type="checkbox"/> 인히터버 스위치 <input type="checkbox"/> 슬레노이드 밸브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input type="checkbox"/> 엔진부조/과열 <input type="checkbox"/> 엔진이음/압축압력(배기 백색)
	오일누유	로커업 커버	[]없음 []미세누유 []누유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팬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 유량	[]적정 []부족	
	냉각수누 수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없음 []미세누수 []누수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냉각수 수량	[]적정 []부족
	고압펌프(커먼레일) - 디젤엔진		[]양호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 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수동변속 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기어변속장치	[]양호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불량	
	동축조인트	[]양호 []불량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불량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input type="checkbox"/> 스티어일기어 <input type="checkbox"/> 스티어링 펌프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양호 []불량
		스티어링 펌프	[]양호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불량
제동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배력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불량
	시동 모터		[]양호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불량
	실내 송풍 모터		[]양호 []불량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불량
	윈도우 모터		[]양호 []불량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특이사항 (메 모)			
작 성 / 발 급 일 : 2018. . .			
작성자	성능상태점검자 : 가격조사산정자 :		